

부산광역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가. 지방분권, 각종 시책업무 추진 등에 의한 인력 보충의 필요에 따라 보정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을 증원코자 하며,
- 나. 정보화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강된 전산직인력 한시정원을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상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 683명을 691명으로 하고 그 중 집행기관의 정원수 668명을 676명으로 하며(안 제2조)
- 나. 2000년 11월 10일 증원된 전산8급 1명 한시정원의 규정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조례 제500호 부칙제2항)

3. 관계법령 및 참고자료

-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
- 다. 표준정원제시행에 따른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 한시정원 조정권고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담당관-1297, 2003. 10. 27)
- 라.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정원운용에 관한 보완지침
(부산광역시 기획관실-1543, 2004. 3. 5)

4.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에 허용되어 있는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현 정원 683명에 8명이 증원된 691명으로 개정하고 시군구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조정 권고에 따라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던 전산8급 1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 함에 따라 부칙 제2항중 관련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좋다고 사료됨.